

<p>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<u>15일</u>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2.5.30]</p>	<p>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30일</u> -</p>
<p>제29조의3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) 법 제29조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사망한 건축사의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 및 이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29조의3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) -</p> <p>1.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건축사의 실무교육)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<u>60시간</u>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: <u>12시간</u></p> <p>3.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: <u>12시간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0조(건축사의 실무교육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40시간</u>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②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 - - - - - - - - - <u>8시간</u></p> <p>3. - - - - - - - - - - <u>8시간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34조의2(정관의 기재사항)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(이하 “공제조합”이라 한다)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목적</p> <p>2. 명칭</p> <p>3. 사무소의 소재지</p> <p>4. 출자 1좌(座)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</p> <p>5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</p> <p>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</p> <p>7. 총회에 관한 사항</p> <p>8. 이사회에 관한 사항</p> <p>9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. 용자에 관한 사항</p> <p>11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</p> <p>1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

	<p>13.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[본조신설 2016.2.11]</p>
<p><신 설></p>	<p>제34조의3(공제조합의 등기) ①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목적 2. 명칭 3. 사업 4. 사무소의 소재지 5. 설립인가의 연월일 6. 출자금의 총액 7. 출자 1좌의 금액 8. 출자의 방법 9.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.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) 11.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.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. 공고의 방법 <p>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6.2.11]</p>
<p><신 설></p>	<p>제34조의4(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) ①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</p> <p>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.[본조신설 2016.2.11]</p>
<p><신 설></p>	<p>제34조의5(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) 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.</p> <p>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입찰보증: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. 계약보증: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. 선급금지급보증: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. 하자보수보증: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

	<p>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</p> <p>5. 하도급보증: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</p> <p>6.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</p> <p>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,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6.2.11]</p>
<p><신 설></p>	<p>제34조의6(보증한도) 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. 다만, 금융기관·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.</p> <p>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6.2.11]</p>
<p><신 설></p>	<p>제34조의7(조사 및 검사) ①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6.2.11]</p>
<p>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망신고의 접수</p> <p>2. ~ 9. (생략)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- - - - -</p> <p>- - 제38조의11제1항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<삭 제>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제38조의11제2항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35조의2(시·도 건축사징계위원회) ① 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·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(이하 “시·도징계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5조의2(시·도 건축사징계위원회) ① - 제38조의11제3항 - - - - 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의3(이의신청의 처리) ① 법 제3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5.30]</p>	<p>제35조의3(이의신청의 처리) ① - 제38조의11제4항 - - - - -</p> <p>② - - - - - 제38조의11제4항 - - - - -</p>
<p>제3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(법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건축사협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, 하자보수 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4.8.6]</p>	<p>제3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 - - - -</p> <p>- 제38조의11- - - - 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- - - - -</p> <p>[본조신설 - - - - -]</p>